



제439회국회(정기회)
제1차보건복지위원회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식품등 표시사항의 전자적 제공 근거 마련 〉

■ 김석기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18291호)

2026. 9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상지원

목 차

I . 개요	1
II . 주요 내용별 검토	2
1. 식품등 표시사항의 전자적 제공 근거 마련	2

I. 개요

1. 김석기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18291호)

가. 제안경위

- (1) 제 안 자 : 김석기의원 등 10인
- (2) 제 안 일 : 2026. 4. 13.
- (3) 회 부 일 : 2026. 4. 14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하여 현재 식품 등의 의무표시 사항이 영양표시, 재료,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과 더불어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하여 식품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가독성 및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 4조의3 신설).

Ⅱ. 주요 내용별 검토

1. 식품등 표시사항의 전자적 제공 근거 마련

가.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식품등의 표시의무자가 표시사항을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한 인식이 가능한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표시의무자는 식품등에 표시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,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3 신설).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4조의3(전자적 방식에 의한 표시) 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한 인식이 가능한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표시의무자는 식품등에 표시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.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

	<u>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
--	---

* 시행일: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

나. 검토의견

□ 현행법 제4조에 따라 표시의무자는 식품등¹⁾에 제품명, 내용량 및 원재료명 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,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식품등(기구 및 용기·포장을 제외함)을 제조·가공·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²⁾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함.

- 아울러 현행법 제6조³⁾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⁴⁾에 따라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당면(기름에 튀긴 면), 국수 또는 냉면,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함.

1) 현행법 제2조에서는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, 용기·포장, 건강기능식품, 축산물을 ‘식품등’으로 약칭함.

2)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6조(영양표시)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”이란 별표 4의 식품등을 말한다.

[참고 1]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4]

3)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) ① 식품을 제조·가공·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4)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7조(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)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.

1.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당면(기름에 튀긴 면), 국수 또는 냉면

2. 즉석섭취식품(동·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·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)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

<헌행법령에 따른 식품등의 의무 표시 사항>

구 분	식품,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	기구 또는 용기·포장	건강기능식품
법 제4조(표시의 기준) 및 시행규칙 제3조 (표시사항)	· 제품명 · 내용량 · 원재료명 ·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·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· 제조연월일,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·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,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<u>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	· 재질 ·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·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·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·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<u>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	· 제품명 · 내용량 · 원료명 ·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·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· 섭취량,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·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·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·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·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<u>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
	(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) · 식품유형, 품목보고번호 · 성분명 및 함량 · 용기·포장의 재질 · 조사처리(照射處理) 표시 · 보관방법 및 취급방법 · 식육(食肉)의 종류, 부위 명칭, 등급 및 도축장명 · 포장일자,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	(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) ·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	(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) · 원료의 함량 ·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

법 제5조(영양표시) 및 시행규칙 제6조 (영양표시)	· 열량 · 나트륨 · 탄수화물 · 당류 · 지방 · 트랜스지방 · 포화지방 · 콜레스테롤 · 단백질	· 열량 · 나트륨 · 탄수화물 · 당류(캡슐, 정제, 환, 분말 형태의 건강기능 식품은 제외) · 지방 · 트랜스지방(표시 생략 가능) · 포화지방(표시 생략 가능) · 콜레스테롤(표시 생략 가능) · 단백질 · 비타민·무기질(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0% 이상 함유하는 경우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

□ 이처럼 제품의 제한된 정보표시 면적에 비하여 현행 식품등의 의무표시 사항이 과다하여 가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표시의무자가 표시사항을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한 인식이 가능한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식품등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·고시하고, 표시와 관련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이는 현행 종이·포장면 중심의 표시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, 핵심 정보의 식별성을 제고하고 부가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.

□ 다만,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□ 첫째, 현행법 제4조제1항 단서⁵⁾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⁶⁾ 및 제6

조7)에 따라 식품의 제품명, 소비기한,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

5)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표시의 기준)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.

6)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2조(일부 표시사항)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, 용기·포장, 건강기능식품, 축산물(이하 “식품등”이라 한다. 이하 같다)에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.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

식품등의 일부 표시사항 (제2조 관련)

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표시사항의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등과 해당 식품등에 표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4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등

가. 식품 및 축산물

- 1) 제품명, 내용량 및 원재료명(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만 표시한다)
- 2) 영업소 명칭
- 3)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(별표 2 II 제1호자목에 따른 “질소가스 충전” 등 표시는 제외한다)
- 4) 제조연월일,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
- 5) 보관방법

나. 기구 또는 용기·포장

- 1) 재질
- 2)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
- 3)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
- 4)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

다. 건강기능식품

- 1) 제품명, 내용량 및 원료명(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만 표시한다)
- 2) 영업소 명칭
- 3)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
- 4) 섭취량,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
- 5)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
- 6)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
- 7)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(별표 2 II 제4호마목에 따른 “이상 사례 신고 1577-2488” 표시는 제외한다)

7)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6조(영양표시)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”이란 별표 4의 식품등을 말한다.

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고,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(제6호의 경우 해당 영양성분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)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열량
 2. 나트륨
 3. 탄수화물
 4. 당류[식품, 축산물,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(單糖類)와 이당류(二糖類)를 말한다. 다만, 캡슐·정제·환·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]
 5. 지방
 6. 트랜스지방(Trans Fat)
 7. 포화지방(Saturated Fat)
 8. 콜레스테롤(Cholesterol)
 9. 단백질
 10.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
- ③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.
1. 영양성분의 명칭
 2. 영양성분의 함유량
 3.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

항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표시하고, 모든 정보는 QR코드 등 바코드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‘e라벨 제도’⁸⁾가 이미 도입·운영되고 있음.⁹⁾

□ 이에 따라 e라벨로 모든 의무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,¹⁰⁾ 이 경우 제품 표시사항의 글씨 크기는 기존 ‘10포인트 이상’에서 ‘12포인트 이상’으로 하여야 함.

< e라벨 적용 식품의 실물 의무 표시사항 >

e라벨 미 적용 식품	e라벨 적용 식품
■ 제품명 ■ 내용량 ■ 영업소 명칭 ■ 소비기한 등 날짜표시 ■ 보관방법	■ 표시 유지
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	■ 대부분 표시 유지 (질소 가스 충전 표시만 생략 가능)
■ 원재료명(식품첨가물 포함 전체)	■ 원재료명(배합비율 상위 3순위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)
■ 영양성분(총 9종 : 열량, 나트륨, 탄수화물, 당류, 지방, 트랜스지방, 포화지방, 콜레스테롤, 단백질)	■ 일부 영양성분(4종 : 열량, 나트륨, 당류, 트랜스지방)
■ 영업소 소재지 ■ 용기·포장의 재질 ■ 식품유형 ■ 품목보고번호	■ 생략 가능

④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, 글씨크기·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성분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8) 식품 표시 가독성 강화를 위한 제도로, 식품의 다양한 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 등 중요 정보는 제품에 더욱 크게 표시하고, 이를 포함한 모든 표시사항은 QR코드 등 바코드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.

9)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(표시의 기준) 및 제5조(영양표시) 등에 따라 식품등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및 「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」(식약처고시)에서는 QR코드 등 바코드 표시장소 및 표시방법, 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, 식품유형별 기타표시사항 e라벨 허용범위 등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음.

10) [참고 2] e라벨 적용제품의 실물 의무 표시사항

< e라벨 적용 식품의 표시사항 표시방법 >

구 분	e라벨 미 적용 식품	e라벨 적용 식품	예외
글씨 크기	10pt 이상	12pt 이상	단, 식품 용기·포장의 형태, 크기의 다양성 및 품목별
장평 (정보표시면)	90% 이상 (면적100cm ² 이하 50%이상)	90% 이상 (축소 미인정)	의무표시사항의 차이로 인해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품목만 예외 규정

□ 또한, 식품의약품안전처가 「식품등의 e라벨 적용 가이드라인」(’26. 2월)을 마련한 점을 고려할 때, 개정안에 따른 입법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- 참고로, 2026년 7월 29일 기준 푸드QR 등록 제품은 1,976건(등록 업체 246개소)이며, 등록제품 현황은 푸드QR 홈페이지(<https://portal.foodqr.kr>)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함.

□ **둘째**, 현행법 제2조제7호11)는 “표시”를 식품등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(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함)에 적는 문자·숫자 또는 도형으로 정의하고 있음.

이는 정보를 식품등 및 식품등의 포장에 직접 기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,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전자적 표시 방식은 이러한 현행법상 표시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.

11)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 “표시”란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, 용기·포장, 건강기능식품, 축산물(이하 “식품등”이라 한다)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(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)에 적는 문자·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.

다.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:

-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(제품명, 소비기한,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)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, 이를 포함한 모든 표시사항은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미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과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
□ 한국식품산업협회:

-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및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(식약처고시) 규정을 통해 이미 운영 중인 사항을 별도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 및 제도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.

□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:

- 기존 제도 및 정책을 통해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상당 부분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, 별도의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정 신설은 중복 입법의 우려가 있어 반대함.

문 의 처

02)6788-5493

【참고 1】**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4]****■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**

[별표 4]

[시행일]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

가.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·가공·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: 2026년 1월 1일

나.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서 제조·가공·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: 2028년 1월 1일

영양표시 대상 식품등(제6조제1항 관련)**1.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.**

가. 과자류, 빵류 또는 떡류: 과자, 캔디류, 빵류 및 떡류

나. 빙과류: 아이스크림류, 아이스크림믹스류 및 빙과

다.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

라. 당류

마. 잼류

바. 두부류 또는 묵류

사. 식용유지류

아. 면류

자. 음료류: 다류(액상차, 고형차만 해당한다), 커피(액상커피, 조제커피만 해당한다), 과일·채소류음료, 탄산음료류, 두유류, 발효음료류, 인삼·홍삼음료 및 기타음료

차. 특수영양식품

카. 특수의료용도식품

타. 장류: 개량메주, 한식간장, 양조간장, 산분해간장, 효소분해간장, 혼합간장, 된장, 고추장, 춘장, 청국장, 혼합장 및 기타장류

파. 조미식품: 식초류(발효식초만 해당한다), 소스류, 카레(커리),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(향신료조제품만 해당한다)

하. 절임류 또는 조림류: 김치류(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한다), 절임류 및 조림류

거. 농산가공식품류

- 너. 식육가공품류: 햄류, 소시지류, 베이컨류, 건조저장육류, 양념육류, 식육추출가공품, 식육간편조리세트 및 식육함유가공품
- 더. 알가공품류
- 러. 유가공품류
- 머. 수산가공식품류
- 버. 동물성가공식품류: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(기타 동물성가공식품만 해당한다), 곤충가공식품, 자라가공식품 및 추출가공식품
- 서.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
- 어. 즉석식품류
- 저. 기타식품류
- 처. 건강기능식품
- 커. 가목부터 처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(주류에 열량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2.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등

- 1) 과자류, 빵류 또는 떡류: 추잉껌
 - 2) 얼음류
 - 3) 다류: 침출차
 - 4) 커피(인스턴트커피, 볶은커피,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만 해당한다)
 - 5) 장류: 한식메주, 한식된장
 - 6) 식초류: 희석초산
 - 7) 향신료가공품: 천연향신료
 - 8) 식염
 - 9) 김치류: 김치(배추김치는 제외한다)
 - 10) 주류
 - 11) 포장육
 - 12)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: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
- 나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 영업자가 제조·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

- 다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
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
- 라. 식품,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자체로는 최종 소
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,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
- 마.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
물
- 바. 농산물, 임산물, 수산물, 식육 및 식용란

【참고 2】

e라벨 적용 제품의 실물 의무 표시사항

관련 법 조문	식품 및 축산물	건강기능식품	기구 및 용기·포장
「식품표시광고법」 제4조(표시의 기준)	▶ 제품명 ▶ 내용량 ▶ 원재료명(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) ▶ 영업소 명칭 ▶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(질소가스 충전 표시는 QR제공 가능) ▶ 날짜 표시(제조연월일,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) ▶ 보관방법	▶ 제품명 ▶ 내용량 ▶ 원료명(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) ▶ 영업소 명칭 ▶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▶ 섭취량,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▶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▶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▶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(별표 2 II 제4호마목에 따른 "이상 사례 신고 1577-2488" 표시는 제외)	▶ 재질 ▶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▶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▶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
「식품표시광고법」 제5조(영양표시)	▶ 열량 ▶ 나트륨 ▶ 당류 ▶ 트랜스지방(해당 영양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)	▶ 열량 ▶ 나트륨 ▶ 당류(캡슐, 정제, 환, 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)	-
「식품표시광고법」 제6조(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)	▶ 포장지 면적이 50cm ²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QR코드로 제공 가능	-	-
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	▶ 'QR코드로 제공 가능' 단서 적용 표시 외 나머지 표시사항	-	-
「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」	-	▶ QR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는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준용	-

□ 식품표시광고법

제4조(표시의 기준)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.

□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

제2조(일부 표시사항)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, 용기·포장, 건강기능식품, 축산물(이하 “식품등”이라 한다. 이하 같다)에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.

제6조(영양표시)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”이란 별표 4의 식품등을 말한다.

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고,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(제6호의 경우 해당 영양성분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)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.
(이하 생략)

[별표 1] 식품등의 일부 표시사항

4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등

가. 식품 및 축산물

- 1) 제품명, 내용량 및 원재료명(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만 표시한다)
- 2) 영업소 명칭
- 3)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(별표 2 II 제1호자목에 따른 “질소가스 충전” 등 표시는 제외한다)
- 4) 제조연월일,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
- 5) 보관방법

나. 기구 또는 용기·포장

- 1) 재질
- 2)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
- 3)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
- 4)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

다. 건강기능식품

- 1) 제품명, 내용량 및 원료명(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만 표시한다)
- 2) 영업소 명칭
- 3)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
- 4) 섭취량,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
- 5)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
- 6)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
- 7)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(별표 2 II 제4호마목에 따른 "이상 사례 신고 1577-2488" 표시는 제외한다)

□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주요 관련 규정

II 공통표시기준

6.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(규칙 제2조 및 제6조 관련)

가. 표시대상

- 1) 식품(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·가공한 완제품에 한함)
- 2) 축산물(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·가공한 완제품에 한함)
- 3) 기구 및 용기·포장

나. QR코드 등 바코드 표시장소 및 표시방법

- 1) QR코드 등 바코드를 이용하여 표시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, QR코드 등 바코드는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QR코드 등 바코드가 작거나 흐리거나 곡면에 위치하는 등 인식하기 어려워서는 아니 된다.
- 2)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제공하는 표시 정보는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 정보를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,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II. 공통표시기준, III.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및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 따른다.
- 3) QR코드 등 바코드 주변에는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해당 식품등에

제외된 표시정보가 있음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

예) “세부 표시정보는 여기를 스캔하세요”, “표시되지 않은 원재료와 영양성분 등은 QR로 확인하세요” 등

- 4) 시각·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에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제공하는 표시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.
- 5) 1)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QR코드 등 바코드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QR코드 권장 위치를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, QR코드 등 바코드 주변에 촉각돌기를 사용할 수 있다.

다. 식품등의 용기·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일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

- 1) 식품등의 용기·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일부 표시사항은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과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, 이 고시 Ⅱ. 공통표시기준, Ⅲ.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의 기타표시사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(다만, Ⅱ. 공통표시기준, Ⅲ.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의 기타표시사항 중에서 ‘QR코드 등 바코드로 제공 가능’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).
- 2) 1)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Ⅱ. 공통표시기준, Ⅲ.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및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한다. 다만, 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.
 - 가) 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재료(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한다)는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, 표시방법은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한다. 이 경우 복합원재료 및 혼합제제 식품첨가물은 다음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.
 - (1) 복합원재료는 그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(제품명 포함) 또는 식품의 유형만을 표시할 수 있다.
 - (2)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「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」에서 고시한 혼합제제류의 명칭만을 표시할 수 있다.
 - 나)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는 표 4 및 표 6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과 향료를 해당 식품의 제조·가공 시에 직접 사용·첨가한 때에 많이 사용·첨가한 순서대로 3개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.
- 다) 영양성분은 열량, 나트륨, 당류 및 트랜스지방을 표시하여야 하며,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도 3 표시서식 도안의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

에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. (다만, 트랜스지방의 경우 실제 해당 성분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.)

라) 다)에 따른 영양성분 이외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과 함께 열량, 나트륨, 탄수화물, 당류, 지방, 트랜스지방, 포화 지방, 콜레스테롤 및 단백질에 대하여 그 명칭, 함량 및 규칙 제6조 관련 별표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(%)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 열량, 트랜스지방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(%) 표시를 제외한다.

마) 영양성분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 4 표시서식 도안의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정보표시면의 영양성분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.

3) 글씨크기 등

가) 글씨크기는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제7호에 따라 12포인트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부족하여 12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.

(1) 정보표시면적 50cm²이상~100cm²미만 : 7포인트 이상

(2) 정보표시면적 50cm²미만 : 6포인트 이상

(3) 유리병 형태의 소주, 맥주 제품 : 10포인트 이상

나) 글자 비율(장평)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제7호에 따라 정보표시면적 크기와 상관없이 9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, 유리병 형태의 소주, 맥주 제품의 경우에는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□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II. 공통표시기준 (기타표시사항 예시)

2. 장기보존식품의 표시

가. 통·병조림

1) (생 략)

2) 산성통조림식품은 “산성통조림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(QR코드 등 바코드로 제공 가능).

나. (생 략)

다. 냉동식품

1) (생 략)

2) “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”의 경우 살균한 제품은 “살균제품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(QR코드 등 바코드로 제공 가능).

□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중 주요 관련 규정

제5조(표시방법)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~ 2. (생략)

3. 글씨크기

표시면적이 적어 정하여진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주표시면 외의 정보 표시면에 일괄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을 다음의 구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.

가 ~ 나. (생략)

다. 3호 본문 및 각 목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의 일부 정보를 QR코드 등 바코드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,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제7호에 따라 글씨크기는 12포인트 이상([별표 1]에 따른 영양·기능정보 표시를 포함한다.)으로 한다. 다만,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부족하여 12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.

1) 정보표시면적 100cm² 이상~200cm² 미만 : 10포인트 이상

2) 정보표시면적 50cm² 이상~100cm² 미만 : 7포인트 이상

3) 정보표시면적 50cm² 미만 : 6포인트 이상

제6조(세부표시기준 및 방법)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~ 8 (생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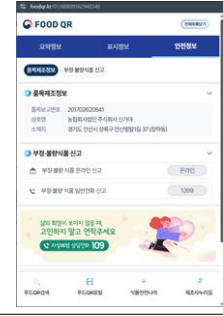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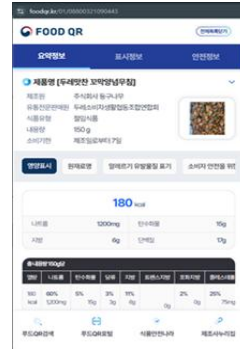
9. 원료명 및 함량

가. 원료명은 해당제품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를 우선표시하고 그 외의 원료는 제조시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아니한 원료명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또한,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원료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료명은 3개를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원료를 우선표시하고 그 외의 원료는 제조시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제9조(준용) 「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」에 관하여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, 기구 또는 용기·포장, ‘방사선조사’, ‘포장재질’, ‘인삼의 유래 기본문안’, ‘한국인 영양섭취기준’, ‘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’, ‘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’, ‘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’ 등에 대하여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을 준용한다.

【참고 4】 식품 푸드QR 실제 표시 사례

다음 푸드QR 표시 사례는 푸드QR 포털(portal.foodqr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제품명(업체명)	푸드QR 유형	포장지 표시 QR코드 (휴대폰 카메라로 스캔·접속) https://foodqr.kr/01/08801043015714
신라면침 (농심) 	대량인쇄형 	  
고소한 구운란 (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신가야) 	대량인쇄형 	  
두레맛찬 꼬막양념무침 (주식회사 둥구나무) 	안전소비형  (소비기한: 260315)	 
추부깻잎 (만인산농협) 	생산자구분형 	 